

장애인은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은 차별이 없고 통합된 환경에서 HDOH의 서비스와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

HDOH와 그 대리인은 ADA 또는 504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ADA 또는 504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거나 지원하는 개인을 강압, 위협, 보복 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정책은 모든 HDOH 수급자, 대리인 및 계약자에게 적용됩니다.

정의

A. 장애는 개인과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개인의 주요 생활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2. 해당 장애의 병력 또는
3. 해당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B. 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편의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HDOH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C. 편의란 규칙,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한 합리적인 수정을 포함한 조정, 건축, 통신 또는 교통 장애물의 제거와 같은 환경 조정 또는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차별 금지 조정관

차별금지조정관은 HDOH가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할 것입니다.

504 조⁴ 및 ADA⁵ (다음 사항에 대한 보장 포함)

A. HDOH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식을 채택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⁴ 다음 40 C.F.R. § 7.85(g)을 참조하십시오: "HDOH가 십오명 (1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적어도 1명을 지정하여 [40 CFR 7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해야 합니다."

⁵ EPA는 1973년 재활법 504 조를 시행하지만 ADA 제 2 장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HDOH는 연방 재정 지원 수급자로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ADA 제 2 장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ADA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였습니다.

1. 개인이 장애 상태를 공개하고 HDOH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2. 개인의 사생활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유지하는 절차 및
 3.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
- B. HDOH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데이터를 유지하고 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운영 지침의 일부로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을 작성합니다.
- C. HDOH는 장애인이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HDOH와 그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 D. HDOH는 ADA 제2장 또는 504조를 위반할 수 있는 행위를 주장하는 불만 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평한 해결을 제공하기 위해 차별 금지 프로그램 및 정책에 명시된 불만 처리 절차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거부된 편의 요청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모든 불만 사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E. HDOH는 ADA 및 504조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합당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F. HDOH는 직원이 장애가 있는 개인의 필요 사항과 법률 준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현직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설 접근성

HDOH의 자체 평가에 따라 HDOH는 모든 HDOH 시설이 어느 정도 "공공 시설"인지 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 대중이 사용할 것인지 고려할 것입니다. HDOH는 40 C.F.R. § 7.65 각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거나 기타 합리적인 편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A. 기존 시설:

1.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램 접근성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구조적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사례 검토 후 장비 또는 시설을 재설계합니다.
- b.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기능을 안내하는 적절한 표지판을 제공합니다.
- c. 접근 가능한 현장에 직원이나 서비스를 재배치합니다.

2. HDOH는 장애인을 위한 대피 절차를 수립합니다.

B. 신축:

HDOH에 의해, HDOH를 위해 또는 HDOH를 사용하기 위해 건설된 각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는 장애인이 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합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변경은 가능한 한 최대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합니다.

C. 캠퍼스 외부:

HDOH가 아닌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 또는 임대 계약에는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은 접근 가능해야 하며 합리적인 편의를 위한 기타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이 HDOH에서 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HDOH는 이러한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이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편의:

HDOH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장애가 있는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서 혜택이 거부되거나,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달리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각 개인은 HDOH가 편의 요청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편의 제공을 요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HDOH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보조 지원, 서비스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이 항상 준비되어 있거나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필수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요구 사항의 포기를 요구하거나, 인증 요구 사항 위반 또는 HDOH에 과도한 재정 또는 행정 부담을 가하는 편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편의 시설을 결정할 때 HDOH는 개인의 희망 사항과 특정 적절한 상황(예: 제공된 문서, 장애인과 협력하는 기관의 전문 지식)을 고려할 것입니다.

HDOH는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 서비스, 기회 또는 혜택을 수락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대한 언어 통역을 요청하시려면 다음에 문의해 주십시오: HDOH Non-Discrimination Coordinator(소재지 1250 Punchbowl Street, Honolulu, HI 96813) (전화: (808) 586-4400 또는 이메일: doh.nondiscrimination@doh.hawaii.gov). 본 문서의 서면 번역을 요청하기 위해 구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